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2594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5. 5.자로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계약은 11,25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1,25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선민정

별지